

기업지배구조현장

2019. 03. 14

현대글로벌비스 주식회사

전 문

현대글로벌비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최고의 품질 경쟁력 및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은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와 감사,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1. 주주

1.1 주주의 권리

① 회사의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이하 “주주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기타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

②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회사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③ 주주권은 주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단,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1.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회

2.1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진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상법,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2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인 전체이사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 의 역할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⑤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⑥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2.3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

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이어야 한다.

2.4 이사의 선임 및 후보 추천

①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있는 인사로 균형있게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5 사외이사의 역할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팀을 둔다.

2.6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7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상법 및 관련 법령, 정관 등 내규 또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⑤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8 투명경영위원회

- ① 투명경영위원회는 주주권익의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며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다.

-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주요한 경영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 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주주권익보호 관련 인수·합병,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주요 경영사항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및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1인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주요 IR행사 참석 및 주주 면담을 통한 이사회와 주주간의 소통
- 주주권익 관련 청취된 의견 및 제안을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전달
- 주주권익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발굴 및 제안

④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회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⑤ 투명경영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연간 활동내역은 회사의 지속가능 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주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진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 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3.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를 회사가 선임하며, 외부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고객 · 직원 · 협력사 ·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⑦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5.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 ②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중요 현안과제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④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⑤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⑥ 회사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⑦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